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6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 개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신설 등 폐지 또는 신설되는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며,
- 의원 자치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 등 정원책정기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07명에서 8명이 증원된 615명으로 조정(안 제2조)

- ▶ 집행기관의 정원 : 596명 ⇒ 603명(증 7명)
- ▶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1명 ⇒ 12명(증 1명)

※ 증원사유

-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: 5급 1명, 6급 2명, 7급 1명, 9급 3명
-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보강 : 6급 1명

나. 직급별 정원의 총수 조정(안 별표1)

구분	합계	정무직	일 반 직							연구직	지도직	별정직	기능직
	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	
개정 전	607	1	475	4	25	122	149	118	57	1	23	17	90
개정 후	615	1	484	4	26	125	150	116	63	1	22	17	90
증감	+8	-	+9	-	+1	+3	+1	△2	+6	-	△1	-	-
기준비율			100%	1%이내	6%이내	27%이내	31%이내	24%이내	11%이상				

- 지방행정혁신(균형발전) 직급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(부칙)
  - ▶ 한시정원 : 일반직 2명(6급 1명, 7급 1명)
  - ▶ 존속기한 : 당초 2007. 6. 30 ⇒ 변경 2008. 6. 30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소요 추계서 별첨
- 다. 관계부서승인 : 기구 및 정원 승인(총무과-12219, 2007.5.30)
- 라. 입법예고 : 2007.6.11-6.16(5일간), 제출의견 없음.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본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5명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603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12명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조례 제1789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항 중 “6급 1명, 7급 1명(균형발전 2명)은 2007년 6월 30일까지”를 “6급 1명, 7급 1명(균형발전 2명)은 2008년 6월 30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직종 · 직급별	합계	집행기관						의회사무과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읍	면	
<b>총 계</b>	<b>615</b>	<b>603</b>	<b>284</b>	<b>142</b>	<b>44</b>	<b>19</b>	<b>114</b>	<b>12</b>
<b>정무직</b>	<b>소계</b>	<b>1</b>	<b>1</b>	<b>1</b>				
	군수	1	1	1				
<b>일반직</b>	<b>소계</b>	<b>484</b>	<b>477</b>	<b>250</b>	<b>92</b>	<b>16</b>	<b>17</b>	<b>102</b>
	4급	3	3	1	2			
	4~5급	1	1	1				
	5급	26	24	11	4	1	1	7
	6급	125	123	63	16	4	66	34
	7급	150	148	85	27	6	5	24
	8급	116	115	60	30	4	2	19
	9급	63	63	28	13	1	3	18
<b>연구직</b>	<b>소계</b>	<b>1</b>	<b>1</b>	<b>1</b>				
	연구관							
	연구사	1	1	1				
<b>지도직</b>	<b>소계</b>	<b>22</b>	<b>22</b>		<b>22</b>			
	지도관	1	1		1			
	지도사	21	21		21			
<b>별정직</b>	<b>소계</b>	<b>17</b>	<b>17</b>		<b>17</b>			
	6급상당	16	16		16			
	7급상당	1	1		1			
<b>기능직</b>	<b>소계</b>	<b>90</b>	<b>85</b>	<b>32</b>	<b>11</b>	<b>28</b>	<b>2</b>	<b>12</b>
	기능6급	3	3	2		1		
	기능7급	8	7	3	1	2		1
	기능8급	15	14	6	1	4	1	2
	기능9급	30	29	9	6	11		3
	기능10급	34	32	12	3	10	1	6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본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607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96명</u>                  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<u>11명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(생략)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②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6급 1명, 7급 1명, 8급 1명(복식부기 3명)은 2008년 12월 31일까지, <u>6급 1명, 7급 1명(균형발전 2명)</u>은 2007년 6월 30일까지, 6급 1명, 7급 2명, 8급 1명(2014평창동계올림픽 4명)은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, 7급 1명, 8급 1명(사업별예산제도 2명)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 <u>615명</u>-----                  --.</p> <p>1. ----- : <u>603명</u>                  2. ----- : <u>12명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한시정원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②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6급 1명, 7급 1명(균형발전 2명)</u>은 2008년 6월 30일까지,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.</p>

현 행				개 정 안									
[별표1]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[별표1]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				
직종·직급별	기관별	총계	집행기관	의 회 사무과	직종·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		의 회 사무과	
							소계	본청	직속 기관	사업소	읍		면
총 계		607	596	11	총 계	615	603	284	142	44	19	114	12
정무직 계		1	1		정무직 계	1	1	1					
군수		1	1		군수	1	1	1					
일반직 계		475	469	6	일반직 계	484	477	250	92	16	17	102	7
4급		3	3		4급	3	3	1	2				
4~5급		1	1		4~5급	1	1	1					
5급		25	23	2	5급	26	24	11	4	1	1	7	2
6급		122	121	1	6급	125	123	63	16	4	6	34	2
7급		149	147	2	7급	150	148	86	27	6	5	24	2
8급		118	117	1	8급	116	115	60	30	4	2	19	1
9급		57	57		9급	63	63	28	13	1	3	18	
연구직 계		1	1		연구직 계	1	1	1					
연구사		1	1		연구사	1	1	1					
지도직 계		23	23		지도직 계	22	22		22				
지도관		1	1		지도관	1	1		1				
지도사		22	22		지도사	21	21		21				
기능직 계		90	85	5	기능직 계	90	85	32	11	28	2	12	5
기능6급		3	3		기능6급	3	3	2		1			
기능7급		8	7	1	기능7급	8	7	3	1	2		1	1
기능8급		15	14	1	기능8급	15	14	6	1	4	1	2	1
기능9급		30	29	1	기능9급	30	29	9	6	11		3	1
기능10급		34	32	2	기능10급	34	32	12	3	10	1	6	2
별정직 계		17	17		별정직 계	17	17		17				
6급상당		16	16		6급상당	16	16		16				
7급		1	1		7급	1	1		1				

# 비용소요 추계서

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 [별표 1]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2조 [별표 1]

## 2. 정원의 변동 내역

-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 7명 순증
  - 5급 1명, 6급 2명, 7급 1명, 9급 3명
- 평창군의회 6급 전문위원 1명 순증

## 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총 계	353,809	
○ 인건비(100)	309,430	
- 기본급(01)	186,628	○ 본봉 5급 2,622,500원×1명×12월=31,470,000원 6급 2,346,900원×3명×12월=84,488,400원 7급 1,708,400원×1명×12월=20,500,800원 9급 994,800원×3명×12월=35,812,800원 ○ 정근수당 172,272,000원×2/12×50%=14,356,000원
- 수 당(02)	35,395	○ 초과근무수당 7,210원×8명×30시간×12월=20,764,800원 ○ 정액수당 · 가족수당 30,000원×8명×1.08×12월=3,110,400원 · 정근수당가산금 - 25년이상 130,000원×2명×12월=3,120,000원 - 20년이상 25년미만 110,000원×2명×12월=2,640,000원 - 15년이상 20년미만 80,000원×2명×12월=1,920,000원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 출 근 거
- 수 당(02)		- 10년이상 15년미만 60,000원×1명×12월=720,000원 - 5년이상 10년미만 50,000원×1명×12월=600,000원 · 사회복지업무수당 30,000원×8명×12월=2,520,000원
- 정액급식비(03)	12,480	130,000원×8명×12월=12,480,000원
- 교통보조비(04)	12,240	○ 5급 140,000원×1명×12월=1,680,000원 ○ 6·7급 130,000원×4명×12월=6,240,000원 ○ 9급 120,000원×3명×12월=4,320,000원
- 명절휴가비(05)	17,227	172,272,000원×1/12×120%=17,227,200원
- 가계지원비(06)	35,890	172,272,000원×1/12×250%=35,890,000원
- 연가보상비(07)	9,570	172,272,000원×1/12×1/30×20일=9,570,660원
○ 물건비(200)	15,240	
- 직책급 업무추진비 (204-01)	1,200	100,000원×1명×12월=1,200,000원
- 직급보조비(204-02)	14,040	○ 5급 250,000원×1명×12월=3,000,000원 ○ 6급 155,000원×3명×12월=5,580,000원 ○ 7급 140,000원×1명×12월=1,680,000원 ○ 9급 105,000원×3명×12월=3,780,000원
○ 이 전 경 비(300)	30,139	
- 성과상여금(303)	11,707	1,463,410원×8명=11,707,280원
- 연금부담금(304-01)	14,643	172,272,000원×0.085=14,643,120원
- 국민건강보험금 (304-02)	3,789	172,272,000원×0.022=3,789,980원

# 관계법령 발취

## ※ 지방자치법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※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~ 3. (생략)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(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.